

해고 예고 통지서

수신		소속	
발신		대표자	

귀하와 당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이 종료하고자 하며,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미리 알려드립니다.

해고 예고일		해고일	
해고 사유			
근거 규정	근로기준법 제26조 (해고의 예고)		

- 해고일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합니다.
-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업장명 : _____ 대표자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근로자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작성 기준: 근로기준법 제26조

-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-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.
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(같은 법 제27조),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(제23조).
-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